

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「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」시행계획 수정공고

2025년도 「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8월 11일
기술보증기금 이사장

1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
- 민간 기술거래기관*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

* (정의)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기술이전법' 이라 한다)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, 대학, 테크노파크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

□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급시기

-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기술거래 기관에 납부한(예정 포함)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

구분*	신청기간	중개수수료 지원비용 지급(예정)
1차	'25.4.1. ~ '25.6.30.	'25.7월
2차	'25.7.1. ~ '25.11.28.	'25.12월

* 사업기간 내 2회 중개수수료 지원비용 지급

□ 지원규모 및 예산

- **(지원규모)** 연간 20건 내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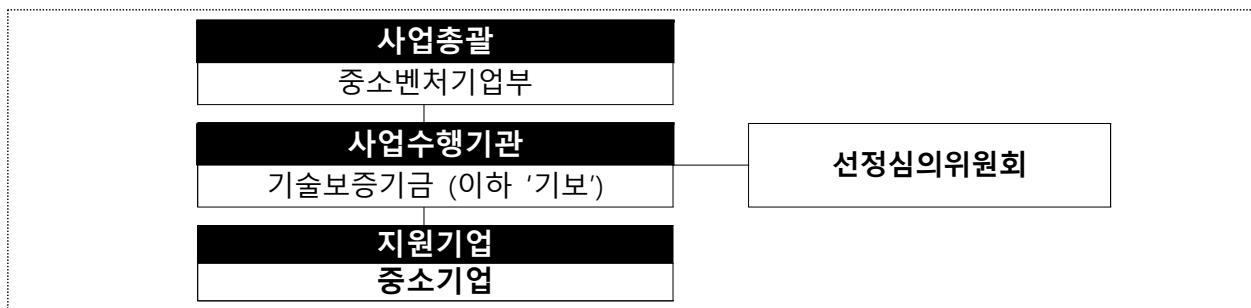
- **(지원예산)** 28백만원 내외

*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**(법(법령))**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및 동법 시행령
- **(요령(고시))** 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
- **(관리지침)**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

□ 추진체계



- **(사업총괄)**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(중소벤처기업부)

- **(사업수행기관)** 사업 운영, 지원기업 선정·평가*, 과제관리 및 비용 집행, 사업성과 관리 등 (기술보증기금)

* (선정심의위원회)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

□ 지원방식 및 한도

- **(지원방식)** 기술 유형에 따라 ①신탁기술*, ②일반기술**, ③파산기술***로 구분하고, 일반기술은 중개방식(단독/공동****)을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

- * (신탁기술) 「기술이전법」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'기술신탁관리기관'에 위탁된 기술
- ** (일반기술) 「기술이전법」제2조제5호의 '공공기술' 등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
- *** (파산기술) 기술보증기금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의뢰받아 매각중개를 실시한 파산기업 보유 기술
- **** (공동중개)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개방식

- (지원한도)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
 - * 중개수수료 지원금액 이외의 비용(부가세 등)은 지원기업이 부담

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

□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

- (지원대상)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(아래 기간 내, 기술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)
 - (계약 체결일) 2024. 12. 1. ~ 2025. 11. 28.
 - (신탁기술) 「기술이전법」 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(위탁자)*
 - *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
 - (일반기술) 민간 기술거래기관*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**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, 중개수수료 납부 또는 납부 하기로 약정한 기업
 - * 「기술이전법」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,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
 - ** 「기술이전법」 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을 의미
 - (파산기술) 기술보증기금의 「파산기업 보유 특허 매각 공고」를 통해 파산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
- (지원방법) 기술유형에 따라 중개수수료 일부(혹은 전부)를 중소기업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게 지급

[기술유형별 증개수수료 지원내용]

구분	납부기관	지원대상	지원범위
신탁기술	「기술이전법」상 기술신탁관리기관	위탁자(양도인)인 증소기업	증소기업이 납부한 증개수수료(면세) 전액 또는 일부
일반기술	「기술이전법」상 민간 기술거래기관 (기보, 공공기관 등 제외)	①증개수수료를 납부한 증소기업 ②증개수수료 수취예정인 민간기술거래기관*	증소기업이 납부하는 증개수수료(부가세 제외) 전액 또는 일부
파산기술	파산기술을 증개한 기술보증기금	기보의 증개를 통해 파산기업 보유 특허를 매수하고, 증개수수료를 납부한 증소기업	증소기업이 납부하는 증개수수료(부가세 제외) 전액 또는 일부

* 기보와 공동증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대하여 증소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가능

□ 신청 자격

- 사업기간 내('24. 12. 1. ~ '25. 11. 28.)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증개수수료를 정산 완료한 **증소기업** 또는 정산 예정인 **민간 기술거래기관**
 - **(증소기업)** 「증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**증소기업**
 - **(민간 기술거래기관)** 증소기업과 일반기술 증개수수료 정산을 약정하고, 증개수수료를 수취예정인 **민간 기술거래기관***

* (유의사항) 기보와 공동증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함

□ 제외 대상

- 신청기업 또는 평가대상 기술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선정 후 비용 지급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- ① 휴·폐업 중인 기업
- ②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③ 평가대상 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평가대상 기술 제외 대상

- 전용실시권 등 독점적 실시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출원 중에 있는 기술(단, 기술보유자 동의하에 전용실시권이 이전된 건은 신청 가능)
- 질권,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
-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
- 고소·고발, 소송, 무효심판, 취소신청, 강제집행, 조정, 중재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
- 권리자가 다수인 기술(단, 공동권리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신청 가능)

- ④ 제출서류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
- ⑤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- 신청기업이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(법상 창업 여부와 무관)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

-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
 1. 일반유통주점업, 2. 무도유통주점업, 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
 4.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기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- 매수희망자가 사업화 주체(기업)가 아닌 일반 개인(자연인)인 경우 또는 신청기업과 관계기업*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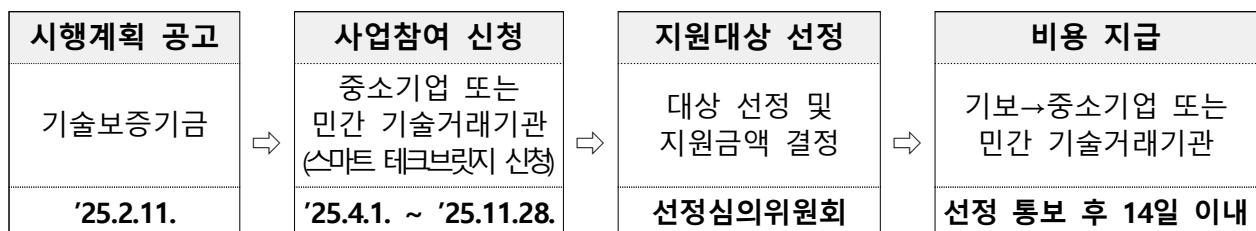
* 관계기업

- 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
- ②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관계기업
- ③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의 집단에 소속하는 기업(개인기업 포함)

3

지원절차 및 내용

□ 지원절차



* 상기 일정 등은 기보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기술 유형별 증개수수료 지원내용

- (지원범위) 본 사업기간* 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상, 실집행된 기술료**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증개수수료 금액 이내

* (사업기간) '24.12.1.~'25.11.28.

** (기술료)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/선급기술료에 한하며, 매출실적 등에 따른 경상기술료 제외

가 신탁기술

- 양도인(위탁자)이 정산을 완료한 중개수수료(면세) 전액 또는 일부

나 일반기술

-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 한도* 내에서, 매수자(중소기업)가 납부 완료한(예정포함) 중개수수료(부가세 제외) 전액 또는 일부 지원

* '25년도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 한도 : 6.5%(참고2)

- (단독중개)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단독중개한 경우로, 매수자(중소기업)가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완료한 중개수수료 비용 보전(페이백)
- (공동중개) 기보와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공동중개한 경우로, 매수자(중소기업)가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 예정인 중개수수료 비용을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직접 지급(단, 매수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 중, 부가세는 직접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해야 함)

다 파산기술

- 매수자(중소기업)가 정산을 완료한 중개수수료(부가세 제외) 전액 또는 일부
- (지급방법) 중개수수료 지원금액은 사업기간 내 2회('25.7월, 12월) 지급예정이며, 1차 지급시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 조기 종료 가능
- (지원한도)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최대 1천만원 이내
 - *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1천만원 초과분 또는 해당 중개수수료율이 지원요율 최고 한도 초과 시 그 차액은 신청기업이 자체 부담
 - **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 페이백(일반기술 공동중개건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(부가세 제외)를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직접 지급 가능)
- 해당 회차의 지원대상 금액 합계가 당해연도 예산 한도(20백만원)을 초과할 경우, 지원대상별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지급 예정(천원미만 절사)

※ 지원금액 안분지급 산식

- (예시) 1차 10백만원 지원 이후, 2차 지원예정금액 총액이 40백만원인 경우

$$\frac{10\text{백만원}}{\text{(당회차 잔여예산)}} \times \frac{1\text{백만원(A기업의 2차 지원예정금액 총액)}}{40\text{백만원(2차 지원예정금액 총액)}} = \frac{25\text{만원}}{\text{(A기업의 2차 최종 지원금액)}}$$

* 당회차 잔여예산 = 당해연도 지원예산(20백만원) – 기 지원금액(10백만원)

4

공고·사업 기간 및 신청방법

□ 공고 및 접수 기간

- (공고기간) '25. 2. 11. (화) ~ '25. 11. 28. (금) (291일간)
- (접수기간) '25. 4. 1. (화) ~ '25. 11. 28. (금) (242일간)

□ 신청 및 접수 방법

[신청주체별 사업신청방법]

신청주체	일반기업 (단독·각자대표)	공동대표기업	민간 기술거래기관
온라인 신청	가능	가능*	불가(우편제출)

* 온라인 신청 가능하나, 일부 서류는 원본 우편 제출 필요

- (온라인 신청)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 (<https://tb.kibo.or.kr>)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
 - 제출서류 연번 별로, 스캔 파일(PDF) 각각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
 - * (유의사항)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제반서류의 제출일이 상이한 경우, 신청기한 내 신청서와 제반서류가 모두 유효하게 제출(도착일 기준)된 날을 신청일로 봄
- (공동대표기업) 온라인 신청 후, 제출서류 중 연번 8, 9, 10, 11 서류는 공동대표 2인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
 - 위 등기우편 제출 서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전 영업일(1차: 6.28., 2차: 11.28.)까지 기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

- 온라인/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'선정심의 대상 기업'으로 인정하며, 연번별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본건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
- 중개기관의 정책상 상기 서류를 신청기업에게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, 사업수행기관(기보)에 직접 제출* 가능 (단, 중개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또는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서류 미제출시 심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)

온라인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①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확인

-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(<https://tb.kibo.or.kr>)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
- 공고문 등을 통해 사업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요건, 제출서류 등 확인

② 신청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

- (경로)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 > 로그인 > 신청 및 공모 > 정부지원사업 > 기술이전 증개수수료 지원사업 > 신청형태(온라인) >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및 제출
- (제출서류) 연번별로 개별 파일 구분 및 파일명을 서식명으로 일치시킨 후 업로드

③ 서명 등록

- 전자서명(공동인증서 등)을 통해 "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" 필수
 - ☞ **사전 준비사항 : (개인기업)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등
(법인기업) 법인 사업자 인증서 및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등**

* (유의사항) 공동대표기업 및 공동권리기술은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온라인 서류 제출 후 일부 원본서류 우편 송부

④ 최종 제출

- 최종 확인 후 제출(제출서류 중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 자격 상실)
 - ☞ 제출 완료된 사업 참여 신청건은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, 작성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.
 - ☞ 각 회차 신청 마감일(1차: 6.30., 2차: 11.28.)까지 "제출"이 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.
 - ☞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 전 제출 완료 부탁드립니다.

□ 제출서류

가 신탁기술

구분	연번	서식명
필수 제출 서류	1	사업자등록증명 -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: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	2	중소기업 확인서 -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: 중소벤처24 (www.smes.go.kr)
	3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- 발급처: 국세-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/ 지방세-정부24 (www.gov.kr) -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- 신청접수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
	4	이전대상기술의 산업체산권(특허, 실용신안 등)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- 발급처: 특허로 (www.patent.go.kr) - 연차료 납부 및 권리관계 등 사전확인, 출원 중인 기술은 출원사실증명원 제출
	5	기술이전계약서 사본 - 양도인, 매수인, 중개기관*의 서명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(원본대조필 날인) * 중개기관의 서명 및 날인 또는 중개사실에 관한 사항이 '기술이전계약서'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, 기술이전계약서 사본과 함께 중개기관의 기술증명서가 확인되는 '중개사실확인서' 등 보완제출 가능
	6	중개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- 양도인(위탁자)이 지급한 아래의 중개수수료 증빙서류 * 정산내역서, 이체확인증, 영수증, 기술신탁 최종계산 승인서 등 정산/납부 내역
	7	기술료 납부 증명서류 - 기술이전계약서 상의 기술료 정산/납부 관련 증빙서류 * 정산내역,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
자동 제출 서류	8	「기술거래 중개수수료 지원사업」 참여 신청서<붙임1>
	9	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별첨1-1>
	10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
	11	확인서(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)<별첨2>
추가 제출 서류	12	기술신탁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<별첨4> - 본건 사업참여에 대한 동의서(해당기관이 직접 작성) *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(기보 기술거래보호부)에 직접 제출 가능 - 기술신탁관리기관이 '기보'일 경우 제출 생략 가능
	13	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<별첨6> -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직접 작성 *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(기보 기술거래보호부)에 직접 제출 가능 - 기술신탁관리기관이 '기보'일 경우 제출 생략 가능
	14	확인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 및 동의서<별첨1-1, 별첨1-2> - 기술의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확인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 및 공동권리자의 기업정보 수집·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-1>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 필수 제출(원본 등기우편)

* 연번 1~4번 서류는 **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**

** 연번 12~14번 서류는 해당시에만 제출

구분	연번	서식명
필수 제출 서류	1	사업자등록증명 -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: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	2	중소기업 확인서 -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: 중소벤처24 (www.smes.go.kr)
	3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- 발급처: 국세-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/ 지방세-정부24 (www.gov.kr) -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- 신청접수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
	4	이전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 등)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- 발급처: 특허로 (www.patent.go.kr) - 연차료 납부 및 권리관계 등 사전확인, 출원 중인 기술은 출원사실증명원 제출
	5	기술이전계약서 사본 - 양도인, 매수인, 중개기관*의 서명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(원본대조필 날인) * 중개기관의 서명 및 날인 또는 중개사실에 관한 사항이 '기술이전계약서'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, 기술이전계약서 사본과 함께 중개기관의 기술중개사실이 확인되는 '중개사실확인서' 등 보완제출 가능
	6	중개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양도인과 매수인이 중개기관(민간 기술거래기관)에 지급한 아래의 중개수수료 증빙서류 - 협약서, 중개수수료 산정서,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 등 <p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left: 20px;">< 기술이전계약서에 중개수수료율 및 금액이 기재된 경우 아래 ①, ② 제출 생략 ></p> <p>① 협약서: 양도인 또는 매수인이 중개기관과의 중개수수료율 등에 대한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 제출</p> <p>② 중개수수료 산정서: 중개수수료율 등에 대한 별도 산정 기준이 있는 경우 제출</p> <p>③ 세금계산서: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 하며, 비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의 직인 날인 필수</p> <p>④ 이체확인증: 입금 받는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 발급 자료 -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, 제출일 기준 인터넷 이체내역 출력문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제출 (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 불가)</p> <p>⑤ 기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필요 시)</p> <p>- 공동중개에 한하여, 매수인(중소기업 등)이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 금액 중, 부가세를 매수인이 납부한 증빙서류는 선정 시, 사업수행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추가 제출</p>
	7	기술료 납부 증명서류 - 기술이전계약서 상의 기술료 정산/납부 관련 증빙서류 * 정산내역,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
	8	기술이전 증개활동 결과보고서(민간거래기관용)<별첨5> -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직접 작성 *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(기보 기술거래보호부)에 직접 제출 가능
	9	기술이전 증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<별첨6> -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직접 작성 *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(기보 기술거래보호부)에 직접 제출 가능

구분	연번	서식명
자동 제출 서류	10	「기술거래 증개수수료 지원사업」 참여 신청서 - 중소기업 신청시 <붙임1> 양식 사용 -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신청시 <붙임2> 양식 사용
	11	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별첨1-1>
	12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
	13	확인서(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)<별첨2>
추가 제출 서류	14	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별첨1-1>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 -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신청시 대상 중소기업의 기업정보 수집·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-1>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 필수 제출
	15	확인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 및 동의서<별첨1-1, 별첨1-2> - 기술의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확인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 및 공동권리자의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별첨1-1>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 필수 제출

* 연번 1~4번 서류는 **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**

** 연번 14~15번 서류는 해당시에만 제출

***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신청 시, 증개수수료를 납부 또는 납부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동의서 및 증빙서류 준비

다) 파산기술

구분	연번	서식명
필수 제출 서류	1	사업자등록증명 -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: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	2	중소기업 확인서 -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: 중소벤처24 (www.smes.go.kr)
	3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- 발급처: 국세-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/ 지방세-정부24 (www.gov.kr) -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- 신청접수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
	4	이전대상기술의 산업체산권(특허, 실용신안 등)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- 발급처: 특허로 (www.patent.go.kr) - 연차료 납부 및 권리관계 등 사전확인, 출원 중인 기술은 출원사실증명원 제출
	5	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및 해당 회생법원의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- 양도인, 매수인, 증개기관*의 서명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(원본대조필 날인) * 증개기관의 서명 및 날인 또는 증개사실에 관한 사항이 '기술이전계약서'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, 기술이전계약서 사본과 함께 증개기관의 기술증개사실이 확인되는 '증개사실확인서' 등 보완제출 가능
	6	증개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- 매수자(중소기업)가 지급한 아래의 증개수수료 증빙서류 * 정산내역서, 이체확인증, 영수증 등 정산/납부 내역
	7	기술료 납부 증명서류 - 기술이전계약서 상의 기술료 정산/납부 관련 증빙서류 * 정산내역,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

구분	연번	서식명
자동 제출 서류	8	「기술거래 중개수수료 지원사업」 참여 신청서<붙임3>
	9	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별첨1-1>
	10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
	11	확약서(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)<별첨2>
추가 제출 서류	12	확약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 및 동의서<별첨1-1, 별첨1-2> - 기술의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확약서(공동권리자용)<별첨3> 및 공동권리자의 기업정보 수집·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-1>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 필수 제출(원본 등기우편)

* 연번 1~4번 서류는 **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**

** 연번 12번 서류는 해당시에만 제출

5 선정 및 통보

□ 서류접수 및 요건검토

- **(요건검토)** 지원대상, 신청자격, 제외대상 여부 등 기본요건 사전 검토 및 기술이전계약서,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 등 제출서류 확인

※ 유의사항

- ① 제출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'선정심의위원회' 대상으로 추천
- ② 제출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자동 탈락됨
- ③ **공동대표기업 및 공동권리자의 온라인 신청은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, 아래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기보로 우편제출해야 함**
 1. 「기술거래 중개수수료 지원사업」 참여 신청서(붙임1,2,3)
 2.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별첨1-1>
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별첨1-2>: 공동대표자, 공동권리자 개인별 작성
 4. 확약서(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)
- ④ **민간 기술거래기관이 신청시 모든 서류를 기보로 우편제출해야 함**
- ⑤ 신청기업이 미비된 서류(③번 서류에 한함)를 보완제출하였더라도 신청 마감일 경과후 제출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

□ 선정심의위원회 개최

- **(평가방법)** 기보 내·외부 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신청기술 유형별 심의 진행

-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적정성* 등 검토 및 중개수수료 지원요율 결정
 - *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의 일반사항, 중개활동 노력도 및 추진결과 등 제출서류 적정성 확인
- **(선정통보)** 선정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결과 통보
 -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, 통장사본 등 중개수수료 지원금액 지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
 -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 지원금액 지급

6 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기업인 중소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
- 사업수행기관은 신청기술 유형별(신탁, 일반, 파산) 선정기업을 지원 함에 있어 연간 지원한도 등에 따라 유효한 접수 건의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
- 신청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지원 한도는 동일기술 당 최대 1천만원이며 '22~'24년도 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」을 통해 기 지원받은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함
- 동일 기술의 매매 또는 전용실시권 허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은 본 사업기간('24.12.1.~'25.11.28.) 내 1회에 한함(사업기간 내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기 지원된 경우 추가지원은 불가)
- 동일기술에 대한 복수의 통상실시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원은 1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동일한 지원한도(최대 1천만원) 내에서 중복 지원* 가능
 - * 본 사업기간 내에 기술이전계약과 중개수수료 등 비용지급이 완료된 건에 한하며, 중개 수수료의 총 합계는 지원한도(1천만원)을 초과할 수 없음

- 통상실시권은 본 사업기간 내에 권리자(기술보유자)의 동의를 받아 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을 신규 등록하거나 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원 가능*

* 다만, 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이 기 설정되어 있거나 권리자 동의없이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
- 복수의 기술거래기관이 공동중개한 경우, 중개수수료 지원은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, 동일기술에 대한 공동중개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 한도는 1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동일한 지원한도(최대 1천만원) 내에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
- 최근 1년 이내에 동 사업 신청기술과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타 정부부처, 지자체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사실 또는 신청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-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의 사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한 원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보와 사전협의 및 관련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며, 사업비 지급 시까지 이전대상 기술의 권리관계*를 유지해야 함

* 이전대상 기술의 등록원부 상 권리의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등 필요시 연차료를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(신탁기술은 기술신탁관리기관과 별도 협의)

- 사업 진행 상황 안내 등을 위해 신청기업 담당자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(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) 필히 기재

□ 기타 유의사항

-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또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
- 제출서류의 허위, 위·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「공공재정환수법」, 중소벤처기업부 및 사업수행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선정취소, 제재,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통보 후 기보의 추가요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기업의 사정(기업의 확인 지연, 연락 두절 등)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지원기업은 향후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요청, 이력관리, 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신청기업은 「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제21조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(붙임4)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

7 문의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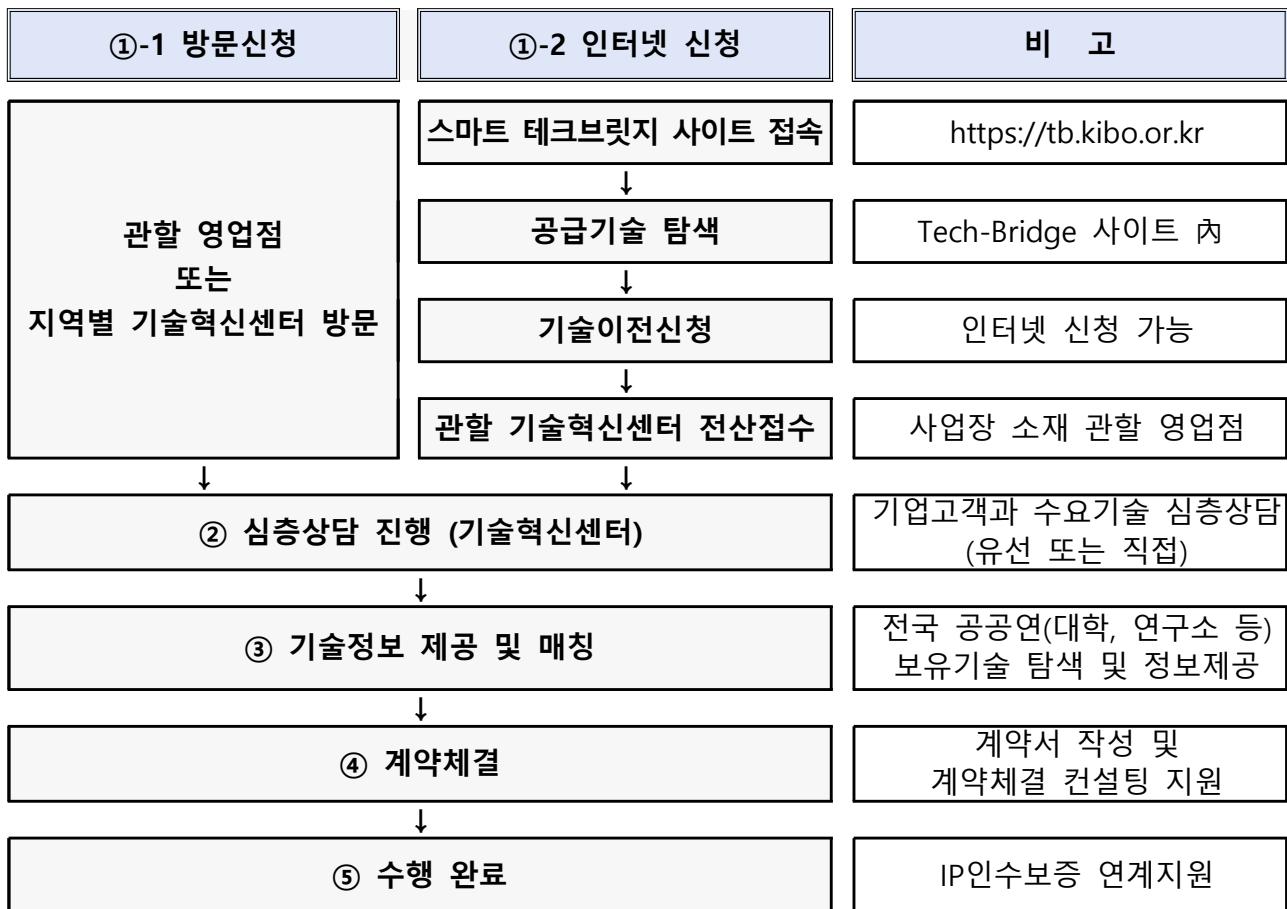
- **(사업 문의처)**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
☎ 051-606-7419, 7396, 7640 ☐ transfer@kibo.or.kr
- **(우편 제출처)** (우편번호 48400)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, 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

제출서류(첨부서식)		
붙임1, 2, 3	「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」 참여 신청서	공통제출
별첨1-1	기업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	
별첨1-2	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	
별첨2	확인서(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)	
별첨3	「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」 참여 확인서(공동권리자용)	
별첨4	기술신탁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(기술신탁관리기관용)	신탁기술
별첨5	기술이전 중개활동 결과보고서(민간거래기관용)	일반기술
별첨6	기술이전 중개활동 내용 및 추진 결과	공통제출
붙임4	이의신청서	

참고1

스마트 테크브릿지 활용 기술이전 절차 안내

□ 기술이전 절차



□ 지역별 기술혁신센터

구 분	전 화	주 소
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	02-2155-3662	서울 서초구 매현로 16, 하이브랜드 리빙관 11층
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	02-6124-6930	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, JNK디지털타워 1807호
인천기술혁신센터	032-420-3580	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0, 4층
경기기술혁신센터	031-8006-1570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, 세영빌딩 8층
대전기술혁신센터	042-610-2272	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, 3층
부산기술혁신센터	051-606-6561	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, 기술보증기금 별관 2층
광주기술혁신센터	062-570-7350	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-22, B동 801호
대구기술혁신센터	053-550-1450	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, 그랜드M타워 12층

참고2

2025년도 일반기술 증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한도

2025년도 「기술이전 증개수수료 지원사업」 시행계획 내 일반기술 증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 한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.

관련근거

-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승인(중기부, '25.01.16.)
-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

(일반기술 증개수수료 지원요율 최고 한도) 6.5%

- (산정근기) '24년도 기술보증기금이 증개수수료를 수취한 기술이전 계약전의 평균 증개수수료율*

*소수점 둘째짜리에서 반올림